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스도대학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대학교의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그리스도대학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적사항: 별첨
2. 기타의견: 별첨

2015년 4월 17일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감사 한 명 철 (인)

감사 양 상 용 (인)

피감사자 (임회인)

그리스도대학교

직명 기획처장

성명 강 우 준 (인)

■ 그리스도대학교 감사보고서

-일 시: 2015. 04. 17.

-장 소: 대학회의실

□우수사례: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연관 학생취업실적 허위여부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총장이 행정심판 승소로 592,000,000원과 학교의 명예를 지킴.

□지적사항: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330명 중 모집인원 311명이며, 미충원 19명중 신학부 17명 뉴미디어 1명 기독교실용음악 1명으로 특히 신학부교수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면서 교수감축을 강력 권고합니다.

□시정하여야할 사항: 대학사용 카드 중 총장용 카드가 고액지급 및 가평 등 시외지역사용 내용이 공적 사적 명확성을 판단키 어려우니 고액 사용과 지방에서 사용 경우는 내부 품위를 요함 (다만 2015년4월 업무추진비 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교목실에서 집행한 후원금은 대학교비로 학생들의 예배와 선교활동에 직접 관련 명분이 없거나 납득이 어려운 사항은 관행과 관례에 따른 특정단체 지원이오니 우리대학교가 적자예산임을 감안 선별/축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학년도에 개선 노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시다만 부족합니다)

□건의사항 학교설립 재단 KCEF 이사진 및 외국인 방문비용이 계속발생 됩니다. 타 대학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대책을 적극 검토 요망합니다.

- 대학의 학사관리시스템을 전자계산소 관계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살펴본 결과 현재 학사행정에 관한 각 부서의 요구가 다양하며, 수시로 변동되는 각종 보고서 등의 요청에 현재의 학사관리시스템이 불충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의 교육 통계의 다양화에 대응이 곤란함을 발견했습니다. 학사관리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학의 중추적인 인프라의 하나이며 사실상 대학 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도 관계가 있는 시급한 사안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검토 요망합니다.